

의안번호	2217965
의 퇴 인	황희의원
회 답 일	2025.4.28.
추계번호	25D160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300만원, 2029년 1억 8,400만원(연평균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평균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	173	-	-	184	-	357	7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4조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행정기관등의 장은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 보수, 물품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을 활용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체육지도자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6조(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 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개방자원 이용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의 규모나 물품 가액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7조(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공공개방자원 이용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8조(실태조사 및 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개방자원 이용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공공개방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21조(권한의 위탁)	-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	
2	안 제14조 (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	- 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장애인의 공공개방자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보수, 물품 구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스포츠 체육지도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전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보수 및 물품 수요, 체육지도자 수요 등을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위해 162억 6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104억 6,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2025년 기준)
3	안 제16조(손해보험 및 공제가입)	×	- 제정안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개방자원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료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국가배상법」 제5조¹⁾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행정기관, 공공기관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 다만, 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공개방자원의 규모, 보험료나 공제가입비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4	안 제17조 (공공개방자원 정보 시스템의 구축및 운영)	—	미대상: 행정안전부는 2020년 3월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통합포털(www.eshare.go.kr)을 오픈하여 공공개방자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공개방자원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공공자원 개방 관리시스템 운영 예산] (단위: 백만원) <table> <tr> <td>2021</td> <td>2022</td> <td>2023</td> <td>2024</td> <td>2025</td> </tr> <tr> <td>822</td> <td>1,361</td> <td>1,361</td> <td>1,103</td> <td>1,371</td> </tr> </table>	2021	2022	2023	2024	2025	822	1,361	1,361	1,103	1,371
2021	2022	2023	2024	2025									
822	1,361	1,361	1,103	1,371									
5	안 제18조(실태조사 및 평가)	—	미대상: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공공개방자원 분류체계 및 사용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동 예산으로 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추가 예산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6	안 제21조(권한의 위 탁)	×	—제정안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7조에 따른 공공개방자원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종합계획 수립 평균 예산을 준용함
 - 제정안에서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6년과 2029년에 수립한다고 가정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를 적용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1)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5년 4월 기준, 단위: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3	1.9	2.0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300만원, 2029년 1억 8,4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³⁾(163백만원)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⁴⁾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과 2029년에만 비용이 발생

[표 2]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	173	-	-	184	-	3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3)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자료: prism.go.kr)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90백만원),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27백만원),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98백만원),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37백만원),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65백만원)

4)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